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. 7. 20 선고 2022가단101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6. 15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13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D 사이의 1999. 2. 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이 법원 2021. 10. 28. 접수 제29025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판단

원고가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D가 사해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채권자취소권을 소송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고,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D가 한 사해행위란 상속재산분할협의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,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이 1999. 2. 8.경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,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소가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 또한 설령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사해행위로 지목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제해성

별지